

한의예·학과 학업관리위원회 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예·학과 학업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학업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 및 심의한다.

1. 학생의 학업, 학업관리 및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학업 및 학업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

제3조 (구성) ① 위원회 위원은 한의학과장, 한의예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학생기구 대표와 전임교수 중 한의과대학장이 임명한 임명직위원 각각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한의학과장이 한다.

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학장이 지명하는 교수가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간사) ① 위원회 간사는 한의예과장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.

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학기당 1회 개최하며,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(시행) 이 지침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